

# 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869호 2024. 1. 4.(목)

## 고 시

- 사천시 고시 제2024-2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사항고시-1

## 공 고

- 사천시 공고 제2024-3호 사천시 기록관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----- 2
- 사천시 공고 제2024-15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- 9
- 사천시 공고 제2024-18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----- 22
- 사천시 공고 제2024-19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----- 23
- 사천시 공고 제2024-20호 조례 제정과 폐기 청구권자 총수 공표----- 25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# 사 천 시 공 보

제869호

사천시 고시 제2024-2호

##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4. 1. 4.

## 사 천 시 장

신 고 인	점용·사용 승인사항			실시계획 신고 수리사항		공사완료 신고수리	
	승인번호 (연월일)	위 치	면적(㎡)	신고번호 (신고일자)	공사내역	신고일자	수리일자
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사천시장 (관광진흥과장)	2022-17 (2022.9.8.)	사천시 용현면 주문리 880-1번지선	378.9 (직접)	2022-15 (2022.10.14.)	거북선길 경관정비 위한 가도 설치	'23.12.26.	'23.12.27.
	2022-18 (2022.9.8.)	사천시 용현면 주문리 880-1번지선	2,206.2 (직접)	2022-16 (2022.10.14.)	거북선길 경관정비 (석방림 설치)	'23.12.26.	'23.12.27.
	2022-23 (2022.11.14.)	사천시 용현면 주문리 401-13번지선	808.7 (직접)	2022-20 (2022.12.8.)	최초거북선길(2코스) 전망대 설치를 위한 가도 설치	'23.12.26.	'23.12.27.
	2022-24 (2022.11.14.)	사천시 용현면 주문리 401-13번지선	249.6 (직접)	2022-21 (2022.12.8.)	최초거북선길(2코스) 전망교 및 안내판 설치	'23.12.26.	'23.12.27.
	2022-25 (2022.11.23.)	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205-8, 산9-9, 산9-23번지선	3,670 (직접)	2022-19 (2022.11.29.)	썩사곶 해안 데크로 드 및 부잔교 설치	'23.12.26.	'23.12.27.
	2022-12 (2022.8.2.)	사천시 용현면 금문리 212-3번지선	243 (직접)	2022-14 (2022.10.14.)	사천해전 전망로 데크설치공사	'23.12.28.	'23.12.28.
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사천시장 (해양수산과장)	2023-4 (2023.3.27.)	사천시 서포면 지해리 20-11번지선	2,984 (직접 533 간접 2,451)	2023-9 (2023.4.27.)	구우진항 부잔교 및 도교 설치	'23.12.21.	'23.12.28.

# 사 천 시 공 보

제869호

사천시 공고 제2024-3호

「사천시 기록관 운영규칙」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4일

사 천 시 장

사천시 기록관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

## 1. 폐지이유

「사천시 기록관 운영규정」을 제정함에 따라 「사천시 기록관 운영규칙」을 폐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「사천시 기록관 운영규칙」 폐지

# 사 천 시 공 보

제869호

## 3. 의견제출

이 폐지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(참조: 행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, 사천시청 홈페이지(www.sacheon.go.kr의 정보공개/민원>행정정보공개>법무행정종합정보>입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## 4. 보내실 곳: 사천시장(참조: 행정과장)

(우편번호: 52539, 주소: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,

전화: 831-2563, FAX: 831-6021)

# 사 천 시 공 보

제869호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사천시 기록관 운영규칙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규칙안 내용	의견	비고

# 사 천 시 공 보

제869호

사천시 규칙 제 호

## 사천시 기록관 운영규칙 폐지규칙안

사천시 기록관 운영규칙은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 련 법 규

### □ 「사천시 기록관 운영규칙」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 기록관(이하“기록관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07.7.1.>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칙은 사천시 본청·직속기관·사업소·읍·면·동 및 사천시의회의 보관기록물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<개정 2007.7.1.>

제3조(소속 및 인원구성) ① 기록관은 문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관장한다.<개정 2007.7.1.>

② 사천시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 요원과 문서 관리·간행물관리·시청각기록물관리·기록편찬·정보 공개접수·기록물관리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.<개정 2007.7.1.>

제4조(주요업무 및 업무분장) ① 기록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둔다.<개정 2007.7.1.>

1. 소관기록물 수집·보존 및 활용
2. 기록물등록관리시스템 설치 및 교육
3. 기록물 정리 행사 지도·교육
4. 기록물 분류 기준표 취합 관리 및 조정
5. 기록물 생산 현황 취합 및 주요 목록 전산화, 전문 관리 기관으로의 보고
6.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전문 관리 기관으로의 이관
7. 기록물전산관리시스템 운영
8.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·열람제공

9. 간행물관리

10. 기록물폐기심의회 운영

11. 기록물 서고 관리

12. 기록물 보존기한의 재분류

13. 기록물 편찬, 전시, 홍보에 관한 사항

14. 기타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

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문서관리업무 부서의 장이 정한다.

제5조(기록물관리책임자) ① 담당관, 과장, 직속기관장, 사업소장, 읍·면·동장 및 의회사무국장은 기록관의 관련업무를 수행할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<개정 2007.7.1., 2008.6.30.>

②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기록물의 생산·발송·접수의 등록에 관한 사항

2. 처리과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

3. 단위업무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의 수립과 기록물철의 등록에 관한 사항

4. 기록물의 정리·보관 및 이관에 관한 사항

5. 간행물 및 일반도서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6. 기타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

제6조(기록물관리전산시스템 및 장비구축) ① 기록관에는 문서·간행물·시청 각 기록물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전산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과 관련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.<개정 2007.7.1.>

② 기록물관리전산시스템은 관할 전문관리기관에 연결하여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, 이관목록 제출, 주요기록물의 행정 참고자료 검색·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


제7조(주요기록물의 전산화 등) 문서관리업무 부서의 장은 문서·간행물·시청각 기록물 등 시의 보관기록물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추진하여 각종 기록정보를 신속하게 검색·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조(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) ① 문서관리업무 부서의 장은 당해 기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.

② 문서관리업무 부서의 장은 기록물정리 등 기록물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시 및 시 소속기관의 처리과별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9조(세부사항)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서관리업무 부서의 장이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07. 7. 1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08.6.3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869호

사천시 공고 제2024-15호

「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,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4일

사 천 시 장

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 1. 개정이유

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과 동일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, 시장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여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과 동일한 조항 정비
- 나.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변경(제11조, 별표 3)

# 사 천 시 공 보

제869호

- 재직기간: 2년 미만 → 5년 미만
- 가산일수: 2일 가산 → 3일 가산

다. 시장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기준 구체화(제12조 제2항 제3호)

### 3. 의견제출

이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(참조: 행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, 사천시 홈페이지(www.sacheon.go.kr의 정보공개/민원>행정정보공개>법무행정종합정보>입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### 4. 보내실 곳: 사천시장(참조: 행정과장)

(우편번호: 52539, 주소: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, 전화: 831-2563, FAX: 831-6021)

# 사 천 시 공 보

제869호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「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	의 견	비 고

# 사 천 시 공 보

제869호

사천시 조례 제 호

##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복무선서)** ① 사천시 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은 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사천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.

③ 선서의 방법,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.

**제3조(책임완수)**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비밀 엄수)**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869호

1.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
2.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
3.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
4. 그 밖에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

**제5조(친절·공정)**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,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, 친절 신속·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**제6조(근검·절약)** ① 공무원은 화목·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.

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.

**제7조(당직 및 비상근무)**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·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·숙직·방호원,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,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869호

② 시장은 전시·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,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.

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8조(겸임근무)**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 다만,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겸임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**제9조(파견근무)**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③ 국외의 정부기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재외공무원 복무 규정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869호

**제10조(공무원증)** 공무원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칙」을 준용한다.

**제11조(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)**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.

**제12조(특별휴가)**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.

② 공무원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1.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「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」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.

2. 재직 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안식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, 5일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.

가.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: 10일

나.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: 15일

다.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: 20일

라. 재직기간 30년 이상 : 20일



# 사 천 시 공 보

제869호

3. 시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줄 수 있다. 포상휴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가. 공무원이 재해·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한 경우

나.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

다. 「공직선거법」에 의한 선거의 선거사무종사자로 근무한 경우

라.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4. 자녀 및 형제자매의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장거리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1일의 특별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.

5. 수능 자녀를 둔 직원은 수능시험 당일, 1일의 수능 자녀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**제13조(국외여행)**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 개정 2024 . . >

선서문(제2조제2항 관련)

선 서

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, 국가를 수호하며,  
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  
니다.

선서의 절차 및 방법(제2조제3항 관련)

1. 선서의 시기 및 장소

- 가.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시장앞에서 선서를 하고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.
- 나. 취입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입식에서 선서를 한다.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.
- 다.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입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.

2. 선서의 방식

- 가.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.
- 나.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.

3. 선서 책임자

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복무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.

[별표 3] < 개정 2024 . . >

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(제11조 관련)

1.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

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별표 2(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)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(즉,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)

2.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

-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: 가산안함
-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: 3일 가산

※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

[별표 4] <개정 2024. . . >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12조제1항 관련)

구 분	대 상	일 수
결혼	본인	5일
	자녀	1일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일
출산	배우자	10일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)
입양	본인	20일
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일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일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일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일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	1일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일

비고 : 입양은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,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
## 관 련 법 규

### □ 지방공무원법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### 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

제7조(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)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법 제27조제2항제2호·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.

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869호

사천시 공고 제2024-18호

##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

「주민투표법」 제9조 및 「사천시 주민투표조례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, 2024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2024년 1월 4일

사 천 시 장

(단위 : 명)

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			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	비 고
합 계	내국인	외국인		
94,235	94,137	98	10,471	청구권자 총수의 1/9 이상

# 사 천 시 공 보

제869호

사천시 공고 제2024-19호

##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

「주민소환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사천시장 및 사천시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2024년 1월 4일

사 천 시 장

### ■ 시장

(단위 : 명)

구 분	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	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수(15/100)	읍·면·동별 최소서명인 수	주민소환투표 청구조건
계	93,320		X	
사 천 읍	14,983	13,998	934	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5/100이상의 서명을 받되, 5개 읍·면·동 이상에서 읍·면·동별 각각 최소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
정 동 면	11,017		934	
사 남 면	12,897		934	
용 현 면	6,064		910	
축 동 면	1,411		212	
곤 양 면	2,989		449	
곤 명 면	2,556		384	
서 포 면	3,214		483	
동 서 동	5,348		803	
선 구 동	4,386		658	
동 서 금 동	5,282		793	
별 용 동	12,811		934	
향 촌 동	5,952		893	
남 양 동	4,410		662	



# 사 천 시 공 보

제869호

## ■ 시의회 의원

(단위 : 명)

자치단체별			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	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수 (20/100)	읍·면·동별 최소서명인 수	주민투표 청구요건	
시·군	선거구	읍·면·동					
<b>계</b>			<b>93,320</b>				
사천시	가선거구	<b>계</b>	<b>26,000</b>	<b>5,200</b>	<del>XXXX</del>	청구권자 총수의 20/100 이상 서명을 받되, 각 읍면별 청구권자 총수의 1/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.	
		사천읍	14,983		260		
		정동면	11,017		260		
		나선거구	<b>계</b>	<b>18,961</b>	<b>3,793</b>	<del>XXXX</del>	청구권자 총수의 20/100 이상 서명을 받되, 각 면별 청구권자 총수의 1/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.
		사남면	12,897		190		
		용현면	6,064		190		
		다선거구	<b>계</b>	<b>10,170</b>	<b>2,034</b>	<del>XXXX</del>	청구권자 총수의 20/100 이상 서명을 받되, 2개 이상 면에서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.
		축동면	1,411		102		
		곤양면	2,989		102		
		곤명면	2,556		102		
		서포면	3,214		102		
		라선거구	<b>계</b>	<b>19,426</b>	<b>3,886</b>	<del>XXXX</del>	청구권자 총수의 20/100 이상 서명을 받되, 2개 이상 동에서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.
		동서동	5,348		195		
		선구동	4,386		195		
		동서금동	5,282		195		
	남양동	4,410		195			
	마선거구	<b>계</b>	<b>18,763</b>	<b>3,753</b>	<del>XXXX</del>	청구권자 총수의 20/100 이상 서명을 받되, 각 동별 청구권자 총수의 1/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.	
	별용동	12,811		188			
	향촌동	5,952		188			

# 사 천 시 공 보

제869호

사천시 공고 제2024-20호

##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표

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5조 및 「사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2024년 1월 4일

사 천 시 장

(단위 : 명)

조례 제정·개폐 청구권자 총수			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	요 건	비 고
합 계	내국인	외국인			
94,218	94,137	81	1,346	청구권자(18세 이상) 총수의 1/70 이상	